

사천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 경과

- 제 출 : 2007. 1. 12.(사천시장)
- 회 부 : 2007. 1. 12.(총무위원회, 의안번호 제3호)
- 상 정 : 2007. 1. 23.(제111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(총무과장 엄정기)

가 제안이유

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으로 옥외광고물 허가·신고에 관한 사무가 시장·군수의 고유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신고관련 사무를 위임규칙에서 위임조례로 변경하고, 현재 읍·면에서 처리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업무에 대하여 위임근거를 마련하고, 관련규정 폐지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위임업무를 일부 삭제·조정하려는 것임.

나 주요내용

- 1) 법제처 법령 띄어쓰기 지침에 의거 인용법명 낫표(「」)표시(안 제1조)
- 2) 옥외광고물 신고관련 업무를 사천시사무위임규칙에서 사천시사무위임조례로 그 근거규정을 변경 조정함(별표 1)
- 3)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무(동 제외)를 신설하고, 문서보관 및 폐기, 당직명령사무,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사무를 삭제함 (별표 1)
- 4) 입산신고, 재해사실 확인 및 간이상수도 관련 사무, 토지·건축물 과세대장 작성(동 제외)사무를 삭제하고, 종합토지세·재산세 과세자료 조사(동 제외) 위임 사무명을 수정함(별표 1), (전체 29건 중 삭제 8건, 신설 7건, 수정 6건)

다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95조(사무의 위임 등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송군호)

- 개정 조례안은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및 그 외 관계법령 개정과 2단계 시군조직 개편, 행정환경 변화로 인해 읍·면·동 권한위임사무 29건 중 8건 삭제, 7건 신설, 6건을 수정하여 28건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
-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,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로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: 없음